

「군포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」 시행내규 일부개정
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0년 6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3호

군포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제6항 중 “간사는 해당사업부장이나 부장이 지정하는 자”를 “간사는 개발사업부장이 지정하는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개발사업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개발사업부장 배 진 윤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최 중 환 (390-0976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8조(위원회 운영)	제8조(위원회 운영)	
① <생략>	① <현행과 같음>	
② <생략>	② <현행과 같음>	
③ <생략>	③ <현행과 같음>	
④ <생략>	④ <현행과 같음>	
⑤ <생략>	⑤ <현행과 같음>	
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, 사안에 따라 <u>간사는 해당 사업부장이나 부장이 지정하는 자</u> , 서기는 해당사업 담당자로 하며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	⑥ ----- --- <u>간사는 개발사업부장이 지정하는 자</u> , ----- -----.	